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6. 9(금) 10:00

# 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351호
- 나. 제 출 자 : 고성미의원
- 다. 제출일자 : 2023. 5. 31.
- 라. 회부일자 : 2023. 5. 31.

## 2. 제안이유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에 범죄피해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여 각종 범죄피해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등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및 제3조).
- 나. 위기상황 사유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상의 범죄피해자로 확인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함(안 제3조제17호 신설).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4조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5조 등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다. 입법예고 : 2023. 6. 1 ~ 6. 7

## 5. 검토의견

### 가. 개정 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긴급복지 지원 기준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기 위해 의원발의 되었음.

### 나. 주요 내용

- 1)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및 제3조).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함
- 2) 위기상황 사유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상의 범죄피해자로 확인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함(안 제3조제17호 신설).
  - 긴급복지 지원의 위기 상황 기준에 범죄피해자를 추가함

### 다. 검토의견

- 긴급복지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본 개정안은 범죄피해자를 긴급복지의 대상자로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계법령

##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327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 18., 2012. 10. 22., 2014. 12. 30., 2018. 12. 11.>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17. 3. 14.] [법률 제14583호, 2017. 3. 14., 일부개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